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4. 11.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 6. 28. 김원이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 2024. 7. 1.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2024.8.20.)

상정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11.19.)

상정, 의결(대안반영 폐기)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보건복지위원회(2024.11.21.)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김원이 의원)

현행법에서는 특정 질환 등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병원 지정요건과 지정취소의 사유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전문병원이 대리수술 등 무면허 시술로 적발되어 업무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전문병원 지정의 효력이 유지되는지에 대하여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관계 법규를 위반하여 업무정지 제재를 받은 의료기관이 전문병원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일반 국민이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는 전문병원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음.

이에 전문병원 지정요건으로 최근 3년간 3개월 이상의 의료업 정지 등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추가하는 한편, 전문병원이 3개월 이상 의료업 정지 등의 제재처분을 받으면 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전문병원제도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 최근 병원의 행정직원이나 의료기기 회사의 직원 등 무자격자에 의한 이른바 대리수술 또는 유령수술이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그러한 불법행위가 발생한 전문병원의 지정이 취소되지 않고 있어 제도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는 상황임.

이에 최근 3년간 ‘3개월 이상 업무정지, 개설 허가 취소 또는 폐쇄 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제27조제1항 및 제5항을 위반(무면허 의료행위나 그 교사행위) 하여 전문병원 지정을 지속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지정 취소 사유로 추가함으로써, 특정 질환이나 과목에 전문화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자 하는 전문병원 지정 제도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한편, 전문병원 외에 현행 「의료법」상 지정제도의 대상인 ‘상급종합병원’의 지정요건 및 취소 사유에도 무면허 의료행위나 일정 수준의 행정처분과 관련한 요건은 규정되어 있지 않은바, 유사 제도인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취소와 관련하여서도 추후 논의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생략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강선우 의원)

대안을 제안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6. 심사결과

대안을 제안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